

고 시

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10-2호

서린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
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고시

건설부고시 제367호(1973.09.06)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472호(1984.8.13) 재개발구역 및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공고 제715호(1986.12.27)로 완료된 종로구 서린동 136번지 일대 서린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10년 1월 22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(변경없음): 서린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정비구역 변경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구역명	위 치	시행면적 (㎡)			비 고
			계	대지	정비기반시설	
기정	서린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	종로구 서린동 136 일대	3,148.8	2,690.8	458.0	• 서공고 제715호 (1986.12.27)

3. 정비계획 변경조서

가. 정비기반시설(도시계획시설) 설치계획(변경없음)

나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
다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1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(변경없음)

2) 건축시설계획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비고
	명칭	시행면적 (㎡)	명칭	대지면적 (㎡)						
기정	서린구역	3,148.8	제1지구	2,690.8	종로구 서린동 136 일대	업무	41%	671%	70.35	
변경	도시환경 정비사업							690% 이하		

주) 용적률 : 옥탑층 증축에 따른 건축시설계획 변경

라.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마. 정비사업 시행계획 (변경없음)

바.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(해당없음)

사.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 (변경없음)

아.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(해당없음)

자. 환경성 검토결과 (변경없음)

카.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(해당없음)

타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(해당없음)

4. 변경사유 : 서울특별시 공고 제715호(1986.12.27)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임. 기존 지하5층의 UPS(무정전 전원장치)실 주전산센터를 옥상층으로 이전코자 하며, 용적률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증가하는 구역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코자 함

5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도 참조 : 생략(비치도서와 같음)

6.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종로구 도시개발과(☎ 02-731-1422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공 고**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0-39호**

『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』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『서울특별시 종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0년 1월 22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1. 개정이유**

세외수입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추진과 관련하여 수수료 납부방법 중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, 수수료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납부 추가. (안 제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)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장(참조 : 재무과장, ☎ 731-1229, FAX : 731-067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반대 시 사유명시)
나. 주소, 성명 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),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
라. 보내실 주소 : (우편번호 : 110-701)
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길 50 (수송동 146-2) 재무과

4. 기 타

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재무과(☎ 731-122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0. 1. .

제 출 자 : 종 로 구 청

1. 개정이유

세외수입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추진과 관련하여 수수료 납부방법 중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규정 추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,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납부 추가(안 제1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비 예산사업

나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현금으로”를 “현금 또는 신용카드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수입증지의 납부)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, 수수료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발행하는 수입증지로서 납부해야 한다. 단, 사용료 수수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	제1조(수입증지의 납부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현금 또는 신용카드----- -----.

공 고**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10-40호**

『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』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『서울특별시 종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0년 1월 22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**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**

1. 개정이유

세외수입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추진과 관련하여 수입증지판매대금 및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증지 판매대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 확인 후 구 금고로 불입하도록 함(안 제5조)

나. [별지 제3호 서식]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변경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5일까지

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)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장(참조 : 재무과장, ☎ 731-1229, FAX : 731-067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반대 시 사유명시)

나. 주소, 성명 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라. 보내실 주소 : (우편번호 : 110-701)

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길 50 (수송동 146-2) 재무과

4. 기 타

동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재무과(☎ 731-122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0. 1. .

제 출 자 : 재무과장

1. 개정이유

세외수입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추진과 관련하여 수입증지판매대금 및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증지 판매대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 확인 후 구 금고로 불입하도록 함(안 제5조)

나. [별지 제3호 서식]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』

나. 예산조치 : 비 예산사업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신용카드로 납부한 판매대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 확인 후 구금고로 불입한다.

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

[illegible]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수입증지판매대금,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) ①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,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직접 수요자에게 판매한 수입증지판매대금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입금을 늦어도 익일까지 구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.<신설> ②~③ (생략)	제5조(수입증지판매대금,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) ①----- ----- ----- ----- 단, 신용카드로 납부한 판매대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 확인 후 구금고로 불입한다. ②~③ (현행과 같음)